



교육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

1. 관련 : 「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」(국세청 소비세과-705, '18. 4. 25.)
2. 국세청으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에서는 학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,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>

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

붙임: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1부. 끝.

교 육 부 장



수신자 공립대학교, 국립교육대학교, 국립대학교, 국립대학법인, 사립대학교

실무수습

전종희

행정사무관

김정훈

대학학사제도과장

전결 05/01

문상연

협조자

시행 대학학사제도과-5453 (2018.05.01.) 접수 ()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교육부 14동 (어진 / jjh930120@korea.kr
동)

전화 044-203-6288 전송 044-203-6485 / jjh930120@korea.kr / 비공개(2,5)